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53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이영팔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1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재판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피고인의 직책보다 그가 직접 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제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사람 자신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영팔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들은 내용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1. 처음 들은 내용과 실제 전달한 말을 각각 확인해 주십시오.

특검이 공개한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영팔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연락을 전해 들었고, 밤 11시 40분경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지시와 후속 연락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공개된 보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표현을 완곡하게 바꾼 것인지, 지시의 목적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인지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영팔 피고인이 최초 지시의 단전·단수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가 황기석 본부장에게 실제로 무엇을 하도록 요청했고 어떤 결과를 예상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 언론사 이름이나 단전·단수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협력 요청도 전후 맥락에 따라 범죄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은 당사자들의 실제 말, 그 의미를 이해한 방식, 후속 행동에 근거해야 하며, 상급자의 최초 지시를 피고인 자신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11시 44분경 공문 발송을 빠짐없이 고려하되, 그 의미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특검은 이영팔 피고인의 연락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을 거쳐 같은 날 밤 11시 44분경 관할 소방서들에 비상계엄 출동대비 태세 관련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연락과 공문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통화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무런 후속 행동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문 발송이라는 사실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 태세가 갖춰졌다는 사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문 작성이 미리 준비되고 있었는지, 통화 이후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단전·단수나 특정 언론사에 관한 지시가 공문에 포함되었는지, 경찰로부터 실제 요청이 도착했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 항소심에서도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즉각 대응할 특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피고인과 죄명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영팔 피고인의 무죄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문의 존재와 실제 실행 준비의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공문의 내용이 통상적인 소방 비상대응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는 일로 이어집니다.

3. 소방기관의 비상대응과 위법한 협조를 같은 말로 묶지 말아 주십시오.

소방기관은 대형 사고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락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상 협조가 언론사의 활동을 차단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일반적인 소방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연락이 통상적인 협조였는지, 위법한 조치의 실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실제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영팔 피고인의 인식과 선택을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묻는 허석곤 당시 청장에게 소방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증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이후 황기석 본부장에게 보낸 연락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발신했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혹시 위법한 지시를 알고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지시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상황 관리와 경찰의 정당한 구조·재난 대응에 관한 협조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자료에 비추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것은 표현의 외형만이 아니라 통화 내용과 그 전후의 실제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4. 사후 가담자의 고의와 중요한 임무 종사 해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는 내란의 모의·지휘 또는 중요한 임무 종사 등을 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 재판부는 사후에 가담한 사람의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가 공소사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월 8일 공판에서도 목적에 관한 기재가 충분한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 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이영팔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초 계획을 세운 사람과 나중에 연락을 전달한 사람의 역할이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았던 정보의 범위,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인식, 이후 지시·실행에 관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그에게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할 고의가 증명되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기존 수사 처분과 관련 판결은 정확한 범위에서만 고려해 주십시오.

이처럼 피고인 개인의 인식과 역할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 처분과 관련 판결도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선 내란특별검사 수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이후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니며 종전 처분만으로 새로운 기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공소가 어떠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는지는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대상은 당시 장관이 자신의 지위에서 한 행동과 인식입니다. 이영팔 피고인이 실제로 전달한 연락의 내용과 목적, 후속 조치에 대한 관여는 이 사건의 증거로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저는 이영팔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피고인이 들은 말과 전달한 말, 그 뒤에 이루어진 공문 발송과 실질적인 조치를 차례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개별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한 심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1부 귀중